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과의 계약 주체 변경,
안전점검 참관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 강화 》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28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0952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발주청이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 등 (안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3
나. 건설사업관리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에 안전관리 이행 여부 확인 명시(안 제39조제6항제4호 신설) ...	11
다. 안전점검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비 적용 규정 명확화 (안 제37조제3항 신설)	16
라. 건설사업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관련 행정처분 · 벌칙 · 과태료 추가 · 정비(안 제31조, 제89조, 제91조)	23

I.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0952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염태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4. 1.

다. 회 부 일 : 2025. 4.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 후 시공자에 통보하고, 중요한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

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8호,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제4호, 제62조제5항·제6항, 제89조제5호의2·제5호의4, 제91조제3항제15호 신설 및 제62조제4항, 제91조제2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제91조제3항제12호의2·제14호·제16호 개정).

3. 검토의견

가. 발주청이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 등 (안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③ (생략)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	④ ----- ----- ----- <u>. 안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계약을 체결한 후 통보한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u> <u>-----지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하여-----.</u>
<신설>	⑤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및 시기에 실시될 경우에는 대통령

현행	개정안
⑤ ~ ⑮ (생략)	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안전점검에 참관하여야 하며, 참관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 ⑳ (현행 제5항부터 제18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에 있어 안전점검 수행기관과의 계약 주체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시공사”라 함)에서 발주청으로 변경하고, 주요 안전점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참관하여 발주청 등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62조제4항¹⁾은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되,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3항 및 제4항3)은 시공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작성·관리하고 있는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과의 실제 계약은 시공자가 체결하고 있는데,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건설안전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⁴⁾에서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더라도, 안전점검 수행기관과의 계약 및 비용 지급은 시공자가 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시공자에 예속되고 공정한 점검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⁵⁾이 제시된 바 있으며,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및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및 품질관리 미흡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하였음.⁶⁾

개정안은 안전점검 수행기관과의 계약 및 안전점검 절차 등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과 실제 운영 시 미흡 사례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4)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주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025.2.6.)

5) 오영석,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주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025.2.6.) 자료집 참고

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사조위 사고조사 결과 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원인 지목 -국토부, 사고현장 특별점검 시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다수 지적”, 2023.7.5.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진단보강근의 미설치, ②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③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하였다.
- 특별점검단(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①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②품질관리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③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사항을 지적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 제62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시공자에게 예측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점검이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다음, 안 제62조제5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시행령⁷⁾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동 규정에 대하여는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⁸⁾을 함께 신설하고 있음.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8) 개정안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4.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자

다음, 안 제62조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및 시기에 실시되는 안전점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참관하도록 하고, 참관 결과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안 제62조제6항 신설) 하고 있음. 이는 주요 안전점검에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참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이 보다 내실 있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현행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요약)】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공공공사는 발주청이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 등	-제62조제4항-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 ·공공공사: <u>발주청이</u>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u>지정</u>하여 업무 수행 (계약은 시공자가 체결) ·민간공사: <u>인·허가기관의 장</u>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u>지정</u>하여 업무 수행 (계약은 시공자가 체결)	-안 제62조제4항-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 ·공공공사: <u>발주청이</u>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u>계약 체결</u> 후 시공자에게 통보 ·민간공사: 시공자는 <u>인·허가기관의 장</u>이 <u>지정한</u>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u>계약</u>하여 업무 수행 ※공공공사: 계약 주체를 <u>발주청으로 변경</u> 민간공사: 시공자가 <u>계약을 체결함을 명시</u>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점검결과 통보 의무	<신 설>	-안 제62조제5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안전점검 업무 수행 <u>결과</u>를 <u>발주자,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u>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2조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의무 위반시 제재 규정 -거짓 통보: 6개월 이내 영업정지(안 제31조 제8항나목 신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89조제5호의4 신설) -기한 내 미통보: 300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91조제3항제15호 신설)
안전점검 참관 및 시정명령 등 조치 요청	<신 설>	-안 제62조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및 시기에 실시되는 <u>안전점검 참관</u> -참관 결과 필요한 경우 <u>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u> 건설사업자·주택관리업자에 대한 <u>시정명령 등 조치 요청</u>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발주청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한 이후 시공자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시공자에게 예속되어 안전점검이 부실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발주청이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업무 수행 결과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주요 공종에 대한 안전점검에 공적주체가 참관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발주청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직접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및 점검 일정에 대한 협의·조정이 어려워지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고, 안전 점검 참관과 관련하여,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참관기관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함.

나. 건설사업관리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에 안전관리
이행 여부 확인 명시(안 제39조제6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⑤ (생략)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⑥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62조 제1항9)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가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9조10)는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관한 규정

9)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으로, 제1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재량), 제2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의무).

제2항에 따른 의무적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제39조제6항¹¹⁾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 ①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②제55조제2항¹²⁾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③건설자재·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88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는¹³⁾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현행법 제88조제1호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현행법 제88조제1호의3), 제39조제6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등 시설물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한 경우(현행법 제88조제1호의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건설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13)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1의3. 제3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인
-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 나.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 다. 교량의 교좌장치
 - 라. 터널의 복공부위
 - 마. 댐의 본체 및 여수로
 - 바.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
2. 지하도
3. 활주로
4. 삭도(索道)
5. 댐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계류시설(繫留施設)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추가하고 있는데,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 조사 및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안전점검 미실시 외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 안전점검 실시 여부 미확인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바,¹⁴⁾

건설사업관리가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의 적합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도 함께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측면에서도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현행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요약)】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건설사업관리 수행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업무에 안전관리 확인 명시	-제39조제6항- ○건설사업관리를 수행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제39조제6항- ○건설사업관리를 수행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1. ~ 3. (현행과 같음)

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사조위 사고조사 결과 전단보 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원인 지목 -국토부, 사고현장 특별점검 시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다수 지적”, 2023.7.5.

- 건설사업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골조완료(말기)시 까지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구 분	현 행	개 정 안
	3. 건설자재·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u><신 설></u> ※<u>고의로 제39조제6항의 업무를 게을리</u>하여 시설물의 <u>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u>을 초래한 경우: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현행법 제88조제1호의4)	4.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u>안전관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u> ※<u>고의로 제39조제6항의 업무를 게을리</u>하여 시설물의 <u>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u>을 초래한 경우: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현행법 제88조제1호의4)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정기 안전점검 시행의 적정성 등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부실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 안전점검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비 적용 규정 명확화 (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①·② (생략) <신설>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4항의 안전점검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비는 제62조제8항에 따른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비에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조제2호¹⁵⁾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은 ‘건설기술’에 해당하고, 제2조제3호¹⁶⁾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다른 사람의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마. 건설사업관리
 -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전적

16)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은 ‘건설엔지니어링’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현행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¹⁷⁾는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전문분야에 ‘안전점검’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 현행법 제62조¹⁸⁾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¹⁹⁾는 시공자로부터 정기안전점검 및

17)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 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1. 종합
2. 설계·사업관리
 - 가. 일반
 - 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 가. 일반
 - 나. 토목
 - 다. 건축
 -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18)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정밀안전점검 등의 안전점검을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28조20)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²¹⁾으로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구 분	토목			건축	종합 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분야	
가. 자본금	1억 이상				4억 이상
나. 기술인력	1)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2명 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8명 이상 (토목·건축 분야 각각 25% 이상)
	2)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3명 이상 (건축 분야 60% 이상)	11명 이상 (토목·건축 분야 각각 30% 이상)
	3) 토목·건축·안전	3명 이상			11명 이상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들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대상은 아니고,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들도 「건설기술 진흥법」이 아닌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관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안전점검’을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이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관리되도록 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이 「건설

	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다.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21)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기술 진흥법」의 건설엔지니어링업 관련 규정²²⁾에 따라 보다 내실 있게 수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며,²³⁾

개정안 제31조제2항제8호²⁴⁾도 안전점검을 건설엔지니어링업에 포함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사유를 신설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이 건설엔지니어링업과 안전점검을 구분하고 있음에 따라, 대가산정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 제37조제1항²⁵⁾은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62조제6항²⁶⁾은

2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2조(과징금),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벌칙(제85조부터 제90조까지), 제91조(과태료) 등

23)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기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물안전법」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 및 제재규정이 없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문제가 있는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 분야로써 등록·관리하고 부실한 업무수행 등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24) 개정안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대상을 누락하거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경우

나.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다. 제62조제8항에서 정하는 기술인 등급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한 경우

라. 제62조제1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연 2회 이상 부정적 판정을 받은 경우

25)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26)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점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31조제2항제8호 및 국토교통부의 설명과 같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건설엔지니어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대가산정 등에 있어 현행법 제62조제6항 외에 건설엔지니어링업과 관련된 제37조제1항도 적용되는 것인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대가산정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37조제1항 등과 관련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은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등²⁷⁾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비용은 현행법 제62조제6항 등과 관련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서 규정²⁸⁾하고 있는바,

27)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설계 대가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4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제5장 보칙

28)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③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 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이 건설엔지니어링업에 포함되더라도, ‘안전점검’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현행과 같이 제62조제6항(개정안에서는 제8항으로 이동) 및 그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 등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안전점검’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비에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과 관련된 개정사항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점검 대가 등에 관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y = y_1 + \frac{(y_2 - y_1)}{(x_2 - x_1)}(x - x_1)$$

여기서, x : 해당 규격, x_1 : 작은 규격, x_2 : 큰 규격
 y : 해당공사비요율, y_1 : 작은 규격 요율 y_2 : 큰 규격 요율

⑦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y = y_2 + \frac{(y_2 - y_1)}{(x_2 - x_1)}(x - x_2)$$

여기서, x : 해당 규격, x_1 : 작은 규격, x_2 : 큰 규격
 y : 해당공사비요율, y_1 : 작은 규격 요율 y_2 : 큰 규격 요율

⑧ 제27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6을 적용한다.

라. 건설사업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관련 행정처분·벌칙·과태료
추가·정비(안 제31조, 제89조,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u><신설></u>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 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u> <u>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에서 정하 고 있는 점검대상을 누락하거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경 우</u> <u>나.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u> <u>다. 제62조제8항에서 정하는 기술 인 등급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 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 게 한 경우</u> <u>라. 제62조제1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89조(벌칙) -----

현행	개정안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5의2. (생략) <u><신설></u> 6. (생략) 제9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자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5의4.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자 6.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62조제9항----- ----- 3의2. 제62조제16항----- ----- 3의3. 제62조제20항-----

현행	개정안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4.·5.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3. (생략) 14. 제62조제3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설>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생략) ④ (생략)	----- 4.·5. (현행과 같음) ③ ----- -----.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 ----- ----- -----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13. (현행과 같음) 14. 제62조제3항·제7항 및 제10항----- ----- 15. 제62조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16. 제62조제20항----- -----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벌칙·과태료 규정을 추가하고, 다른 조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관련 영업정지, 벌칙, 과태료 규정 추가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점검대상을 누락하거나 안점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하거나 안전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등에 영업정지(6개월 이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1조제2항제8호 신설),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경우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며(안 제89조제5호의4 신설),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안 제91조제3항제15호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요약)】

현행	개정안
<신설>	-안 제31조제2항제8호- ○<u>안전점검 수행기관</u>이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u>6개월 이내 영업정지</u> 명령 가능하다. 점검대상을 <u>누락</u>하거나 안전점검을 <u>부실</u>하게 실시한 경우 나. 제62조제5항²⁹⁾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u>거짓</u>으로 통보한 경우 다. <u>기술인 등급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u>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한 경우 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결과 <u>연 2회 이상 부적정 판정</u>을 받은 경우
<신설>	-안 제89조제5호의4- ○<u>징역</u>(1년 이하) 또는 <u>벌금</u>(1천만원 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점검 결과를 <u>거짓으로 통보</u>하거나,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u>한 경우
<신설>	-안 제91조제3항제15호- ○<u>과태료</u>(300만원 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점검 결과를 <u>기한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u>

현행법에 따른 안전점검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80조제3호³⁰⁾는 시공자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29) 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⑤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0)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88조 제7호의²³¹⁾는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91조제2항제3호³²⁾는 시공자가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공자’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안전점검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시공사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안 제62조제5항³³⁾에서 신설하고 있는 점검 결과 통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개정안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점검 대상 누락, 안전점검 부실, 안전점검 결과의 거짓 통보 또는 기한 내 미통보 등에 대해 영업정지, 형벌,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성실한 업무수행과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1)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32)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3) 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⑤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벌칙,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함)의 결과와 증빙자료³⁴⁾ 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³⁵⁾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실시’한 자를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89조제5호의2 신설) 하고 있음.

34)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개정안이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신설하려는 안 제89조제5호의4와 유사한 내용의 벌칙을 품질관리와 관련해서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 점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현행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요약)】

현행	개정안
<신설> ※안 제89조제5호의4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 -안전점검 결과를 <u>거짓으로</u> 통보하거나,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자</u>	-안 제89조제5호의2-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u>거짓으로 입력</u>하거나,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자</u>
-제91조제3항제12호의2- ○과태료(300만원 이하)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u>기한 내 미입력</u> 또는 <u>거짓 입력</u>	-안 제91조제3항제12호의2- ○과태료(300만원 이하)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u>기한 내 미입력</u> ※ 거짓 입력: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이동

한편, 안 제91조제3항제12호의2(과태료)는 안 제89조제5호의2(벌칙)에서 ‘거짓 입력’을 형사 처벌 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법 제91조제3항제12호의2³⁶⁾의 과태료 부과 사유 중 ‘거짓 입력’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36)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업무를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벌칙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거짓’, ‘중대한 과실’, ‘기한 미준수’ 행위의 경중을 형량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